국무총리 훈령 제122호 1974. 12. 3.

소관부처 : 내무부

제 목 : 화재예방안전점검과 시정조치에 관한 훈령

1. 화재로 인한 인명의 희생과 재산상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화재 발생시에 응분의 피해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73. 2. 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바 있으며 동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73. 5. 15 한국화재보험 협회가 설립되어 안전점검을 개시한 이래 많은 점검실적을 거양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의한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서 동법 제정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화재예방 점검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동시에 기타 화재예방에 필요한 행정상의 미비점을 시정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훈령하니 관계기관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다 음

1. 각 행정기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제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추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건의하고 있는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 결과를 행정조치와 연결시켜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의 희생과 재산상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할 것.

2. 법 적용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국과를 지휘할 수 있는 직위의 소속공무원 1인을 지정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협회의 안전점검 결과통보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것.

3. 협회의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위험의 정도와 시설비부담의 경중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정 조치하되, 심히 위험한 부위로 지적된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개수 보완토록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는 영업의 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4. 법 적용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의 안전점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대상의 파악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것.

5.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 특수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인등이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거부할 때는 점검거부 사실을 관할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방관서는 협회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6. 화재 보험 가입대상 신축건물의 준공 검사시는 화재보험 가입과 병행

하는 방안을 강구 실시할 것.

7.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유 건물이나 학교등 공공건물도 우선 협회의 안전 점검만은 받고, 위험 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할 것.

8. 내무부와 서울특별시는 화재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시민아파트 등 서민아파트에 대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가 보험가입을 대신하여 주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

9. 재무부는

가. 한국 화재보험협회가 관계기관에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 또는 건의할 때 시급히 시설개수를 요하는 위험부위와 단계적으로 개수하여야 할 부위를 명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점검기준을 세분화할 것.

나. 협회 점검요원의 안전 점검 능력의 향상과 자질향상 및 봉사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것.

다.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내의 공장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법 적용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할 것.

10.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화재보험의 가입대상지역 이외의 지방도시는

가. 시장, 군수 책임하에 소속공무원과 소방관서 직원 및 한국전력주식회사 직원등 관련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합동 안전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나. 안전점검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실시시기 등 기타 안전점검 실시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 주관하에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것.

11.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시설개수 지시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능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에 조치를 의뢰하거나 건의하고 동 조치의뢰나 건의를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

12. 상공부는

가. 화재예방과 관련된 상품의 설명서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방법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나. 프로판가스의 저장시설, 판매시설, 운반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를 가일층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특히 일반 소비자용 가스용기의 유통상의 제반모순을 시정할 것.

13. 내무부와 총무처는 현행 소방직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재검토하고 제도상의 모순을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할 것.

14.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이나 각종 위험물의 취급에 관하여는 각 중앙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대적인 계몽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각자가 위험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시정 보완하도록 지도할 것. 끝.

**국 무 총 리**